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2002. 3

환 경 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p>제6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p> <p>①영 제6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이라 함은 별표 4의 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p> <p>②(생략)</p> <p>③영 제6조제3호 단서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p> <p>1.~8.(생략)</p> <p><신설></p>	<p>제6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p> <p>①-----제12호-----</p> <p>-----</p> <p>-----</p> <p>②(현행과 같음)</p> <p>③-----제5호-----</p> <p>-----</p> <p>-----</p> <p>-----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p> <p>1.~8(현행과 같음)</p> <p>④영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 발생하는 침출수는 별표 8의 제2호나목 (2)(가)에서 규정하는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p>	<p>- 조문정리</p> <p>- 조문정리 및 법령용어 사용을 명확히 함</p> <p>-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수집·운반·보관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을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서 폐기물관리법 별표 8의 매립시설에 적용하는 침출수배출허용기준으로 변경</p>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p>〈신설〉</p>	<p>⑤영 제6조제6호 단서에서 “<u>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u>”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u>폐전주를 재활용 목적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로서 전주의 철거공사 현장과 재활용시설이 설치된 사업장과의 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으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최대보관량 50톤(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100톤)미만의 임시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u></p> <p>2. <u>약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태반을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로서 태반의 배출장소와 재활용시설이 설치된 사업장과의 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으로서 시·도지사의</u></p>	<p>-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함(현행 별표 12의 비고 제2호 및 제3호 규정사항을 옮김)</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신설></p>	<p>승인을 얻어 5일 이내에 5톤 미만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재활용시설과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보관장소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별로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p> <p>⑥영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을 30일(감염성폐기물은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타이어, 광재, 폐내화물, 폐도자기편류,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금속류, 폐지, 폐목재, 무기성오니 [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품의 제조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분쇄시설(금착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에 한한다] 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p>	<p>-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침출수의 발생 및 부패 우려가 없는 무기성 폐기물에 한해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기간을 연장(규제개혁위원회 의결과제)</p>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p>〈신설〉</p> <p>제10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④(생략)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배출량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 배출량) 이 100분의 50이상 <u>증가하거나 감소</u> <u>한 경우</u> 2.~5.(생략)</p>	<p>⑦영 제6조제9호 단서에서 “환경부령 이 정하는 폐기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p> <p>1. 별표 4 제2호다목(3)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 2. 별표 4 제4호라목(1)(나)에서 규정 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3. 별표 4 제5호라목(2)(나)에서 규정 하는 건설폐재류</p> <p>10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④(생략) 1.----- ----- -----<u>증가한 경우</u> 2.~5.(현행과 같음)</p>	<p>-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함</p> <p>- 폐기물배출량이 감소한 경우 에는 별도의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도록 함(규제개혁위 원회 의결과제, 2001.12.7)</p>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p>< 신설 ></p>	<p>⑤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 각호의 서류중 변경되는 서류를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5일 이내에 제출 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그 적정여부를 확인·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의 변경 2. 제조시설의 증설 등으로 시설의 용량이 증가하여 확인받은 지정폐기물의 월배출량 증가 3. 확인받은 지정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이 새로이 배출 4.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운반자 또는 처리자의 변경 	<p>- 폐기물의 배출량 증가 등으로 변경증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p>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p>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p>	<p>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별표 7 제2호나목(2)(바)의 규정에 의한 가스처리시설 또는 활용시설이 설치·변경되는 경우 -----</p>	<p>-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의 처리 또는 활용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매립시설의 적절한 관리 및 사업추진을 확보</p>
<p>제19조의2(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보관량 및 처리기한) 법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p>	<p>제19조의2(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보관량 및 처리기한)----- ----- ----- -----5일----- -----</p>	<p>- 감염성폐기물처리자가 감염성폐기물을 장기 보관시 전염병 등 2차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처리자의 보관기간을 단축</p>
<p>제20조의4(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6.(생략)</p>	<p>제20조의4(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 1.~6.(현행과 같음)</p>	<p>- 위임을 규정한 법조문의 자구와 일치</p>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p>제44조(폐기물처리 등 실적 보고)</p> <p>①~②(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44조(보고 및 검사 등)</p> <p>①~②(현행과 같음)</p> <p>③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④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함에 있어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현재 환경부훈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환경단속 실명제 및 배출시설 통합검사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별표 2】 감염성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p> <p>1.(생략)</p> <p><신설></p> <p>2.~10.(생략)</p>	<p>1.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p> <p>2.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제1항</p> <p>3.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p> <p>4. <u>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u></p> <p>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제1항</p> <p>6. <u>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9조제5항</u></p> <p>7. <u>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u></p> <p>8. <u>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u></p> <p>【별표 2】 감염성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p> <p>1.(현행과 같음)</p> <p>1의2. <u>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u>에 의한 장례식장</p> <p>2.~10.(현행과 같음)</p>	<p>- 장례식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탈지면 등도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장례식장을 감염성폐기물발생기관에 포함</p>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p>【별표 4】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p> <p>1. 공통사항</p> <p>가. 폐기물은 <u>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u>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u>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u></p>	<p>【별표 4】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p> <p><삭제></p>	<p>-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방법 중 공통사항을 법률의 취지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현행 별표 4의 1. 공통사항 부분을 모두 삭제</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p> <p>바.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p> <p>아. 2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p> <p>(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p> <p>(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p> <p>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 <u>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u> </p> <p> <u>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감염성폐기물은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u>타,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어야 한다.</u></p> <p>2.~3.(생략)</p> <p>4.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 및 방법</p> <p>가.~나.(생략)</p>	<p>2.~3.(현행과 같음)</p> <p>4.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 및 방법</p> <p>가.~나.(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다. 보관의 경우 (1)~(3)(생략) (4)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u>다만, 보관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5.(생략) 6.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생략)</p>	<p>다. 보관의 경우 (1)~(3)(현행과 같음) (4) ----- ----- ----- -----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또는 보관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5.(현행과 같음) 6.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현행과 같음)</p>	<p>- 보관기간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중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인 경우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현행 규정은 3톤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정없이 90일 초과 보관이 가능하다는 취지이나 해석에 따라 달리 운용되고 있음)(규제개혁위원회 의결과제, 2001.12.7)</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신설></p> <p>나.(생략)</p> <p>다. 보관의 경우</p> <p>(1)(생략)</p> <p>(가)(생략)</p> <p>(나) 감염성폐기물의 <u>종류별 전용용기</u> 및 그 용기에 표시하는 도형의 색상은 다음과 같다.</p>	<p>(2)감염성폐기물중 <u>태반을 재활용하기</u> 위하여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태반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다목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를 풀어서 수량, 중량(g)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하여야 한다.</p> <p>나.(현행과 같음)</p> <p>다. 보관의 경우</p> <p>(1)(현행과 같음)</p> <p>(가)(현행과 같음)</p> <p>(나) ----- <u>종류별 전용용기의 색상은 흰색으로 하고</u> ----- -----.</p>	<p>- 태반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로 수량 및 중량을 확인토록 함</p> <p>- 유사 전용용기가 보급되고, 전용용기의 색상이 조잡하여 의료기관의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전용용기의 색상을 흰색으로 개선</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다) (생략)</p> <p>①(생략)</p> <p>②상자형 용기의 구조는 이중구조로 하되, <u>그 내부에는 반드시 합성수지로 제작된 주머니 등을 부착하거나 넣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u></p> <p>③~④(생략)</p> <p><u><신설></u></p> <p>(라)~(사)(생략)</p>	<p>(다) (현행과 같음)</p> <p>①(현행과 같음)</p> <p>② ----- <u>---결면에는 뚜껑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는 오렌지색의 투명한 합성수지로 만든 비닐주머니를 부착하거나 넣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u></p> <p>③~④(현행과 같음)</p> <p>⑤<u>재활용하는 태반은 발생하는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비닐주머니에 1개씩 포장하여 전용용기에 넣어 냉동시설에 보관하되, 비닐주머니에는 의료기관명, 중량(g), 발생일자, 담당의사명을 기재하여야 한다.</u></p> <p>(라)~(사)(현행과 같음)</p>	<p>- 뚜껑을 설치하여 사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오렌지색의 투명한 비닐주머니를 사용하여 유사 비닐주머니의 유통을 방지</p> <p>- 태반의 불법유통과 사태아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제를 실시</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3)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감염성 폐기물은 전용의 냉동시설에, 그밖의 폐기물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는 소규모배출자는 조직물류 외의 감염성폐기물을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가 아닌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p> <p>(4)~(6)(생략)</p> <p>(7) <u>보관창고 및 냉동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u></p> <p>(8)(생략)</p> <p>(9) <u>보관창고 및 냉동시설에는 보관중인 감염성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u></p> <p>라.(생략)</p>	<p>(3) ----- ----- ----- -----<u>소규모배출자는 조직물류외의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는 감염성폐기물을</u> ----- ----- -----.</p> <p>(4)~(6)(현행과 같음)</p> <p>(7) <u>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동시설</u> ----- -----.</p> <p>(8)(현행과 같음)</p> <p>(9) <u>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동시설</u> ----- ----- -----.</p> <p>라.(현행과 같음)</p>	<p>- 문장정리</p> <p>- 보관장소에도 감염의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독을 실시하고 표지판을 설치</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별표 6】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p> <p>1.(생략)</p> <p>2. (폐기물중간처리업의 기준)</p> <p>가.~다.(생략)</p> <p>라. 지정폐기물중 감염성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경우</p> <p>(1) 시설 및 장비</p> <p>(가) 공통시설 및 장비</p> <p>○보관창고 및 냉동시설 : 1일 처리능력의 3일분 이상 <u>7일분</u>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u>보관창고</u></p> <p>마.(생략)</p> <p>3~4(생략)</p> <p>【별표 6의2】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p> <p>1. 공통기준</p> <p>가.~사.(생략)</p>	<p>【별표 6】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p> <p>1.(현행과 같음)</p> <p>2. (폐기물중간처리업의 기준)</p> <p>가.~다.(현행과 같음)</p> <p>라. 지정폐기물중 감염성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경우</p> <p>(1) 시설 및 장비</p> <p>(가) 공통시설 및 장비</p> <p>○보관창고 및 냉동시설 : 1일 처리능력의 3일분 이상 <u>5일분</u>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u>보관창고 및 냉동시설</u></p> <p>마.(현행과 같음)</p> <p>3~4(현행과 같음)</p> <p>【별표 6의2】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p> <p>1. 공통기준</p> <p>가.~사.(현행과 같음)</p>	<p>- 감염성폐기물처리업자의 감염성폐기물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변경함에 따라 보관창고 및 냉동시설의 시설 기준을 변경</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p> <p>1. 중간처리시설의 경우</p> <p>가. 공통기준</p> <p>(1)~(2)</p> <p>(3) 폐기물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단서 신설></p>	<p>【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p> <p>1. 중간처리시설의 경우</p> <p>가. 공통기준</p> <p>(1)~(2)</p> <p>(3) ----- ----- ----- -----, 다만, 수질오염물질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는 경우 또는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한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p>	<p>-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의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설치기준을 관리기준(별표 8 제1호라목)에 맞추어 규정</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4)(생략) 나.~라.(생략) 마. 생물학적 처리시설 (1) 사료화·퇴비화·소멸화시설 (가)(생략) (나) 사료화시설은 사료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u>섭씨 80도 이상의 온도에서 사료화할 수 있는 가열처리시설 또는 발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u></p> <p>(다)(생략) (2)(생략)</p>	<p><u>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에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u> (4)(현행과 같음) 나.~라.(현행과 같음) 마. 생물학적 처리시설 (1) 사료화·퇴비화·소멸화시설 (가)(생략) (나) 사료화시설은 사료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u>섭씨 100도에서 30분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돼지전용사료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섭씨 80도(심부온도기준)에서 30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u> (다)(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p>	<p>- 음식물쓰레기에 있을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킬 수 있는 가열온도와 시간을 규정하여 안전한 사료 생산이 가능토록 함 ※ 사료관리법 개정('01. 3.28)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서 가열처리시설의 온도 및 시간 등을 정하고 있어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p>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p>(3)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별표 8 제2호나목(2)(가)의 규정에 의한 생물화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한한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에 이송·처리하거나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는 경우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에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삭제></p>	<p>-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설치기준을 관리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현행 내용중 본문을 삭제하고 단서규정을 일부수정(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만 유입처리)하여 설치기준의 공통사항으로 옮김</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사. 온도지시계 및 자동온도기록계 등의 계측장비는 항상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아.~자.(생략) <신설></p> <p>2. 개별기준 가. 중간처리시설의 경우 (1) 소각시설 (가) 공통기준</p>	<p>사. ----- ----- -----, <u>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보수·정전·화재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아.~자.(현행과 같음) 차. <u>매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 또는 법 제30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처리대상 폐기물 이외의 물질을 매립 하여서는 아니된다.</u></p> <p>2. 개별기준 가. 중간처리시설의 경우 (1) 소각시설 (가) 공통기준</p>	<p>- 소각시설 계측장비 기능의 정상유지 규정에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규제개혁위원회 의결과제, 2001.9.28)</p> <p>- 매립시설에 처리대상 폐기물이외의 물질(폐수 등)을 매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기준 신설</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①~⑤</p> <p>⑥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단서 생략)</p> <p>⑦소각시설의 연소실·열분해실 또는 고온용융실의 최종출구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하며,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중 <u>최초</u> 집진시설의 입구온도 및 배출가스중의 일산화탄소·산소·분진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①~⑤(현행과 같음) <본문 삭제></p> <p>⑦----- ----- ----- -----최초 집진시설(세정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정집진시설 다음의 집진시설을 최초집진시설로 본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한 것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폐기물관리법에서 똑같이 인용한 결과, 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라는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2중규제의 문제점 발생 - 간이사이클론과 전기집진시설이 모두 설치된 경우 전기집진시설을 최초집진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과제와 관련하여, 처리공정상 온도에 영향을 받는 전기집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통상 전 단계에 세정집진시설을 설치하므로 세정집진시설 다음의 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인정 - 굴뚝자동측정기(TMS)를 설치하여 관제센터와 연결한 경우에는 연속측정기록한 것으로 인정(규제개혁위원회 의결과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⑧~⑩(생략) (나)(생략) (2)~(4)(생략) 나. 최종처리시설의 경우 (1)(생략) (2) 관리형 매립시설 (가)~(아)(생략) (자) 매립시설의 복토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①~④(생략) ⑤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최종복토층을 기울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복토층은 하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스배제층(유기성 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한다)·차단층·배수층 및 식생대층을 차례대로 설치하여야 한다.</p>	<p>⑧~⑩(현행과 같음) (나)(현행과 같음) (2)~(4)(현행과 같음) 나. 최종처리시설의 경우 (1)(현행과 같음) (2) 관리형 매립시설 (가)~(아)(현행과 같음) (자) ----- -----, ①~④(현행과 같음) ⑤----- ----- ----- ----- ----- ----- ----- -----</p>	<p>석탄재 등 침출수 및 매립가스의 발생우려가 없는 폐기물만을 매립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가스배제층, 차단층 및 배수층을 설치하지 않고 식생대층만 설치(규제개혁위원회 의결과제, 2001.9.28)</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u><단서 신설></u></p> <p>㉠~㉡(생략)</p> <p>㉢배수층 : 모래를 30센티미터 이상 두께로 포설하거나 복토층 하중상태에서 투과능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 제곱미터 이상인 지오킴포지터, 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의 토목 합성수지를 설치</p> <p>㉣(생략)</p> <p>(차)(생략)</p>	<p>-----, 다만,</p> <p><u>별표 7 제2호나목(2)(사)의 비고 1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식생대층만을 설치할 수 있다.</u></p> <p>㉠~㉡(현행과 같음)</p> <p>㉢-----<u>모래 등을</u>-----</p> <p>-----</p> <p>-----</p> <p>-----</p> <p>-----</p> <p>-----</p> <p>㉣(현행과 같음)</p> <p>(차)(현행과 같음)</p>	<p>- 최종복토층중 배수층의 배수재로 모래외에 자갈 등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소재도 인정하기 위함</p> <p>※ 별표 8 제2호나목(2)(아)의 매립시설 측면의 배수재 규정에도 모래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별표 11의2】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p> <p>1.(생략)</p> <p>2. 지정 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p> <p>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은 광재·분진·도자기조각·석탄재·연탄재·점토점결 폐주물사·폐석회·폐석고·폐내화물·폐콘크리트전주(사업장 폐기물에 한한다), <u>석재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u>, 레미콘제조공정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현장에서 반품된 폐레미콘-----</p> <p>나.~다.(생략)</p> <p>3.~4의9.(생략)</p>	<p>【별표 11의2】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p> <p>1.(현행과 같음)</p> <p>2. ----- ----- ----- -----</p> <p>가. ----- ----- ----- ----- ----- <u>석재가공과정 또는 벤토나이트 제조공정</u>----- ----- -----</p> <p>나.~다.(현행과 같음)</p> <p>3.~4의9.(현행과 같음)</p>	<p>- 벤토나이트는 점토성분으로 환경에 무해하며 이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직경 1~2mm의 석재는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여도 환경에 무해함(규제개혁위원회 의 결과제, 2001.12.7)</p>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4의10. 유기성 오니를 지렁이 먹이로 사용하여 지렁이 배설물로 토지개량제를 만드는 경우	4의10. -----지렁이 등의 먹이로 사용하여----- -----	- 지렁이 먹이 이외에 파리유충을 이용한 토지개량제 생산 등 다양한 방법의 유기성오니 재활용을 인정하기 위함
4의11.(생략)	4의11.(현행과 같음)	
4의12. 폐가전제품(컴퓨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자동차의 범퍼·문짝·본넷 등을 수리·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가전제품을 파쇄하여 금속·플라스틱 등을 회수하는 경우	4의12. 폐자동차의 범퍼·문짝·본넷 등 (이하 “폐자동차”라 한다) 또는 폐가전제품(컴퓨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리·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자동차, 폐가전제품, 폐형광등 또는 폐전지를 파쇄하여 금속·플라스틱·유리 등을 회수하는 경우	- 폐형광등, 폐전지에 대한 재활용 촉진 유도
< 신설 >	4의13. 폐어망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의 미생물 담체로 사용하는 경우	- 폐어망의 재활용 방법 개발로 폐어망 재활용 촉진 유도
<p>【별표 12】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재활용시설</p> <p>1.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별표</p>	<p>【별표 12】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재활용시설</p> <p>1. ----- ----- -----</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11의2 제4호의 경우에는 1일 처리능력 의 3일분 이상 7일분 이하의 <u>냉동시설</u>)</p>	<p>----- -----냉동시설, <u>제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 기간이 60일 이내인 폐기물에 대해서 는 10일분 이상 60일분 이하의 보관 용기 또는 보관시설), 다만, 시·도지 사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재활용시 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u></p>	<p>-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폐기 물보관기간이 60일 이내인 폐 기물에 대한 보관시설 규정 개정 및 부패성 폐기물의 재 활용 등 10일분 이상의 보관 시설이 필요없는 경우의 예외 인정 - 재활용시설에 사료화시설과 퇴비화시설을 추가</p>
<p>2. 재활용시설 : 선별·분리·파쇄·분쇄· 절단·용융·용해·압축·압출·증발· 농축·정제·반응·성형·추출·사출· 소성·건조·주조·가열·냉각·발효· 여과·방사·증자·자숙·<u>골재가공시설</u>· 의약품 제조시설 등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방법 등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해당 시설 1식 이상</p>	<p>2. ----- ----- ----- -----골재가공시설·사료 <u>화시설·퇴비화시설</u>----- ----- -----</p>	
<p>3.(생략)</p>	<p>3.(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p>비고 : 1.(생략)</p> <p>2. 폐전주를 재활용 목적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로서 전주의 철거공사 현장과 재활용사업장과의 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최대보관량 50톤(12월부터 2월까지 100톤)미만의 임시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3. 약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태반을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로서 배출장소와 재활용사업장과의 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5일 이내 5톤 미만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과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장소는 처리업자별로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p>	<p>비고 : 1.(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u><삭제></u></p>	<p>- 동 내용을 제6조제3항으로 옮김에 따라 삭제</p> <p>- 동 내용을 제6조제3항으로 옮김에 따라 삭제</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2)(생략) 자.(생략) 4.(생략) 【별표 16】 행정처분기준 1.(생략) 2. 개별기준 (1)~(14)(생략) <u>< 신설 ></u> (15)~(24)(생략)</p>	<p>(2)(현행과 같음) 자.(현행과 같음) 4.(현행과 같음) 【별표 16】 행정처분기준 1.(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1)~(14)(현행과 같음) (14의2)(별도 붙임) (15)~(24)(현행과 같음)</p>	<p>-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자가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 신설</p>

현행	개정안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14의2) 법 제26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리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법 제28조 제5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